

2017 을지연습 관련 복무점검 계획

1. 점검목적

- ☐ '17년도 을지연습(8.21~24)을 맞아 엄정한 공직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복무점검 실시

2. 점검개요

- ☐ 점검기간 : '17. 8. 21.(월) [1영업일]
- ☐ 점검인원 : ○○○ 실장, ○○○ 팀장, ○○○ 감사역, ○○○ 감사역
- ☐ 점검대상 : 본사 및 서울지역 소재 28개 부서

대 상 부 서	담 당	비고
○ 정비사업금융1센터, 정비사업금융2센터, 서울북부관리센터 ○ 서울동부지사, 서울남부지사, 서울서부지사, 서울북부지사	○○○ ○○○	서울역 등 (7개 부서)
○ 주택도시금융1센터, 주택도시금융2센터, 서울서부관리센터, 서울동부관리센터, 기금기획실, 기금운용처, 도시재생 뉴딜지원단, 도시경제금융지원센터	○○○	여의도 (8개 부서)
○ 기획조정실, 성과재무처, 인사처, 경영지원처, 홍보협력처, 정보운영처, HUG연구센터, 금융기획실, 심사평가처, 채권 관리실, 보증이행처, PF금융1센터, PF금융2센터, 기금분석팀	○○○	부산 본사 (13개 부서)

3. 중점 점검사항

- ① 복무기강 해이 행위
- 장시간 이석, 근무상황처리 미흡(근무지 이탈) 등
 - 출·퇴근시간 준수 및 비상연락망 및 업무대행 체제 유지 여부 등

② 근무기강 문란 행위

- 훈련기간 중 과도한 음주·오락 등 기강문란 행위
- 을지연습을 빙자한 업무처리 지연·방치 사례 등

③ 보안관리 미흡 사례

- 보안문서 등의 방치, 캐비닛 잠금 등 문서 관리상태
- 컴퓨터, 모니터에 PC비밀번호 등 보안사항 노출 여부

④ 기타 금품수수·공금횡령 등 공직비위 사례 등

- 인사 청탁, 부정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생 여부 등
- 법인카드 사적 사용, 허위 출장 등(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
- 지연·학연 등에 따른 업무처리 특혜·차별 사례(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)
- 직장내 성희롱 등

4. 조치계획

☐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

-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조치

☐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 사내전산망 등록,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,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